

조문별 개정이유서

1. 변경허가사항 예외 사유 추가 (안 제5조 개정)

가. 개정 이유

- 기존 발전사업자가 한전이 구축한 공동접속설비에 참여함으로써 공급 전압이 바뀌는 경우 변경허가 예외로 규정해 접속 순번 유지
- 신속한 재생e 보급 확대, 대규모 해상풍력 개별접속으로 인한 국가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방지

나. 개정 내용

- 변경허가사항 변경
 - 송·배전사업자의 사유로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허가사항에서 제외토록 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공동접속 활성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없음